

보도시점 9. 30.(화) 오전 < 9.29.(월) 12:00 >

부처별 기술보호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 열려

- 2025년 제4차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공정거래위원회, 특허청, 방위사업청, 경찰청과 함께 30일(화)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**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**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설명회는 광주(4.1)를 시작으로 부산(6.12)과 청주(7.15)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, 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에서의 **기술자료 유용 행위 금지,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**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**한눈에 파악**할 수 있도록 부처 **합동**으로 개최한다.

‘기술탈취 근절’은 지난 8월 12일 국무회의 토론 이후 9월 18일 국무회의 공식 의결을 거쳐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**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**을 위한 **핵심 정책과제**로 추진되고 있다.

* (국정과제67) 기술탈취는 근절하고,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

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, 기술보호 전문가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방안 및 기술보호 핵심수칙에 관한 강의와, 최근 정부가 발표(’25.9.10)한 **‘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’**의 주요 내용인 기술침해 소송과정에서의 **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강화, 손해배상액 현실화** 등을 위한 **제도 개선방향을** 설명할 예정이다. 아울러, 무료 현장상담을 통해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보안 가이드도 지원받을 수 있다.

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“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촘촘한 제도설계와 지원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”라면서

“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보호제도와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이 잘 알고 활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겠다”고 말했다.

자세한 사항은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(02-368-8924) 및 기술보호 울타리(www.ultari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기술혁신정책관	책임자	과 장	남정렬 (044-204-7780)
	기술보호과	담당자	주무관	육인수 (044-204-7776)



참고1 '25년 제4차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

□ **추진개요**

- (목 적)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개선 및 역량수준을 향상시키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추진
- (행 사 명) 2025년 제4차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
- (주최/주관) 중소벤처기업부 /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
* (협력부처) 공정거래위원회, 특허청, 방위사업청, 경찰청
- (참석 대상) 대기업·공공기관 협력사 및 중견·중소기업 임직원 약 400명
- (일정/장소) '25.09.30.(화), 13:30~16:30 / 서울교대 종합문화관
* (세부주소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(서초동)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

□ **주요내용**

- (커리큘럼) ①기술보호의 개념·필요성 인식개선 및 기술유출·탈취 대응방안 안내를 위한 전문가 교육, ②부처별 기술보호 법·제도 및 지원 사업 안내, ③기술보호 전문가 무료 현장상담 지원(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연계)

구 분	시 간	교육 내용	비 고
설명회	13:30~13:35	■ 개회사(05')	협력재단
	13:35~13:45	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설명(10')	기술보호과장
	13:45~14:15	■ 기술을 지키는 법, 회사를 살리는 전략(30')	기술보호 전문가
	14:15~15:00	■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사업 안내(45')	협력재단
	15:00~15:10	■ Break time(10')	-
	15:10~15:30	■ 하도급법 계약 내 기술유용 사례 및 법적 쟁점(20')	공정위
	15:30~15:50	■ 특허침해 예방과 분쟁 대응전략(20')	특허청
	15:50~16:10	■ 방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및 신청사례(20')	방사청
	16:10~16:30	■ 산업기술 유출 범죄사례와 수사흐름(20')	경찰청
16:30~	■ 폐회 및 만족도 조사	-	

참고2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주요내용

① **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지원 강화**

- ①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* 도입
*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사실조사, 법정 외 진술녹취, 자료보전명령 등
- ②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 및 제공자료 확대
- ③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입증 강화*
* [접수단계] 누구나 신고, 익명제보 도입, [조사단계] 직권조사 도입
[조치단계] 위법행위 행정처분 및 제재 강화

② **손해배상액 현실화**

- ①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도 손해액에 인정되도록 기준 개선
- ②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·운영 및 표준가이드 마련

③ **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**

- ① 범부처 합동설명회 확대 운영(연 4회→5회), 찾아가는 교육, 장기 재직자 기술보호 교육 등 추진
- ②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핵심기술 침해 모니터링(중기부 R&D 수행 기업 중 정부 출연 10억 이상 과제는 필수 모니터링) 등 보호 확대
- ③ 원본증명 및 기술임치 확대,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보급 확산

④ **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**

- ① 기술탈취 범부처 대응단 신설* 및 기술분쟁 신문고 운영
* 기술보호 관련제도 개선, 합동 설명회·간담회 추진, 부처 간 협업 사항 등 논의
- ② 소액 사건에 대한 1인 조정 및 직권조정, 비대면 원격조정 도입